

2026 수지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

수지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26.03.03)

1. (적용) 수지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원선출 업무추진을 위해 적용한다.
2. (구성)
 - 가. 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5명을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026.3.3.부터 위원선출 종료 시까지로 한다.
 - 나. 임원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원선출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 나. 선출 공고·후보자 등록·확인 등에 관한 사무
 - 다. 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무
 - 라. 선거 공보에 관한 사무
 - 마. 선거인 명부작성(보존·열람·투표용지 수령용)
 - 바.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 사.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자. 당선자 안내 및 통보에 관한 사무 등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전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에
협조를 구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업무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6. (선거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 직접
참석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으로
투표할 수 있다.
7. (후보자 등록)

-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2026년 3월 3일에 행하고 등록 마감은 3월 6일 15:00까지로 한다.
-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신청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 대장의 순서에 의한다.
- 라.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 미만일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등록 공고를 한다.
- 마. 후보등록 마감일 당시의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 바.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각각 입후보 등록을 받아 직위별 투표를 실시하며, 각 부문의 차득표자가 다른 직위의 임원으로 당선될 수 없다.

8.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여 임원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9. (명부작성)

- 가. 학부모 선거인 명부는 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부를 작성한다.
- 나.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 인원이 정수 이내로 무투표인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0. (명부의 열람) 선거인 명부는 『열람용』을 교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11. (명부의 수정)

- 가. 선거인 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 월, 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임원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 나. 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이 지난 후 학부모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이중 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임원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12. (명부의 확정)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누리집 등에 선거 개시 7일 전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게시한다.

14.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총회에서 실시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3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 발표 순서는 접수순에 의한다.

15. (투표소 설치)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한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시에는 생략한다.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나. 선거인 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다. 투표함

라. 기표소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가. 투표방식은 기표형태로 한다.

나. 본교 투표권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의 보호자 중 1명에게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표로 함)

다. 본교 재학생의 수가 2인 이상인 학부모의 경우, 투표장에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인의 투표권을, 학부모 2인(예: 부, 모)이 참석하면 2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시에는 전자식 투표의 절차에 따른다.

마.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 무효 등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 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시에는 전자식 투표의 절차에 따른다.

17. (투표시간)

가. 선출관리위원장은 총회일 입후보 소견 발표 직후 학부모가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투표 시간을 정해 안내한다.

나. 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에게는 전자식 투표 시간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한다.

18.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 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한다.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내주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19. (투표참관인)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참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시킬 수 있다.

나. 참관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관인증을 교부하고 패용 할 수 있다.

20.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가.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 간섭, 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투표참관인의 확인은 신분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시에는 전자식 투표의 절차에 따른다.

22. (개표소의 설비)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의 좌석 및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한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시에는 전자식 투표의 절차에 따른다.

23. (개표의 진행)

가. 개표는 총회 당일 투표시간 종료직후 실시한다.

나.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회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참관인)

가.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참관인증을 교부하고 패용하게 할 수 있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1년 이후에 폐기할 수 있다.

28. (임원당선인 결정방법)

가. 개표 결과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나.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기입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을 총회 전에 알린다.

29. (임원당선인의 결정·안내·통지) 임원선출관리위원회가 임원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장이 공표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 후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학교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당선자 안내를 하여야 한다.

30.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때의 안내·통지)

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임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무투표 사실을 게시판에 안내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투표 장소에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